

제2026-64호 2026년 8월 11일(화)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주권도시 기본이 튼튼한 행복도시 미래를 선도하는 경제도시 세계가 찾는 매력도시 모두가 살기 좋은 미래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6-23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6-24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6-24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6-244호 지방하천 점용 허가 고시(쌍봉천)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6-2455호 국동항 내 방치선박 제거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2458호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 현우플랜트(주)
- 여수시 공고 제2026-2459호 여수수협 위판장 일원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6-2464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 (주)정희
- 여수시 공고 제2026-2468호 여수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위·해촉 명단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2470호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결정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정정)
- 여수시 공고 제2026-2477호 자산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의(2차) 공시송달 재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2481호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과태료 본부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2493호 하천 구역 내 위반사항 원상회복 명령(2차) 및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2494호 소하천 구역 내 위반사항 원상회복 명령(2차) 및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2495호 2026년 농지 전수조사(현장조사) 실시 공고

중부민원출장소

-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고시 제2026-2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6-2473호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 고시 합니다.

승인번호 (변경일자)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용 기간	점용·사용 목 적	승인받은 자		면 적(㎡)	
				주 소	성 명	당초	변경
2025-27 (2026.8.10.)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991-20번지 지선 공유수면	'25. 11. 5. ~ '55. 11. 4.	돌산읍 모장항 선착장 보강공사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692.70	1,223.54

2026. 8. 10.

여 수 시 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허가번호 (변경일자)	점용·사용 장소	면적	허가받은 자		기 간	변경사항(목적)	
			주 소	성 명		변경 전	변경 후
2018-68 (2026. 8. 10.)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813-9번지 지선 공유수면	2,822.25㎡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17-18번지	(주)여수 크루즈	2023. 6. 1. ~ 2028. 5. 31.	선박 접안용 바지선 및 도교 운영	선박(유선, 도선 여객선) 및 마리나선박 계류 용 바지선 및 도 교 운영

※ 본 변경허가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기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박람회 종료 후에는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 변경 전 허가목적으로 적용됩니다

2026. 8. 10.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6-24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허가번호 (허가일)	점용·사용			신청인		허가 기간
	장소	면적(㎡)	목적	주소	성명	
2026-32 (‘26. 8. 10.)	여수시 삼산면 동로리 산127번지 북동쪽 해상 공유수면(7개소)	12,096 (직접)	해상풍력 발전사업 예정지역 일대 지반조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107호	(주)쏘일테크 엔지니어링	‘26. 8. 10. ~ ‘26. 11. 9.

2026. 8. 10.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6-244호

지방하천 점용허가 고시(쌍봉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하천 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1일

여 수 시 장

□ 허가내용

1. 하천의 명칭	다음 허가내역 참조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허가내역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비고
		주소	성명	위치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제2026-11호	쌍봉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천1로 32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산동 618-21번지	5.1	전라선 전력수급을 위한 변압기	2026.8.10. ~ 영구	

국동항 내 방치선박 제거 공고

우리 시 국동항 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방치선박이 국동항 이용의 효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적치물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제2026-2455호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8. 6. ~ 2026. 8. 13. (7일간)
2. 위 치 : 국동 당머리 부근 어항구역 등
3.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폐선박 1척 등
4. 장애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됩니다.

나. 아울러, 국동항 내에 장애물을 방치한 행위자(소유자 파악 시)에 대하여는 「어촌·어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79)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적치장소	국동항 당머리 부근 어항구역		
적치물 종류	방치 선박		
어항관리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6-2455호
처리 예정일자	2026년 8월 6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		



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장애물(적치물)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6년 8월 13일까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6일

여 수 시 장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 월 6 일

여 수 시 장

1. 폐업대상 업체

상 호	영업 소재지	폐업대상 건설 업종 (등록번호)	법인번호 (주민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현우플랜트(주) (윤O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봉두로 318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여수2016-06-05)	206211-0003083	2026. 8. 6.	사업포기

2. 공고 기간: 2026. 8. 6. ~ 2026. 8. 20.(14일)

3. 공고 장소: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

4. 기타

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6-2459호

여수수협 위판장 일원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여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6일

여 수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지정목적

- 여수수협 위판장 내 선박 입·출항 및 하역 운반차량 출입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 및 건전한 낚시문화조성
- 수자원 보호 및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 유도

3. 관련근거

- 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낚시통제구역)
- 나. 「여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 다. 「여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견수렴)
-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주요내용

가. 낚시통제구역 지정내역 : 1개소 (위치도 : 붙임1)

명 칭	위 치	면적(길이)	비 고
여수수협 위판장 일원	여수수협 위판장 일원 (청정위판장 일원 ~ 유류사업과 일원)	8,588㎡ (826m)	

나. 통제기간 : 지정고시일 ~ 해제 시까지(24시간 연중)

다. 통제행위 : 낚시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

라.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

○ 근 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별표6]

○ 과태료 : 8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이상 80만원)

마. 담당부서 : 여수시 수산경영과(☎ 061-659-5597)

바. 행정예고기간 : 2026. 8. 6. ~ 8. 28.(22일간)

사. 공고방법 : 여수시청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6. 8. 28.까지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수산경영과에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붙임2】 의견제출서 서식 참고

○ 행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인적사항(성명, 확인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 포함)

나. 제출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 낚시관리팀(여수시 국동임시별관)

다. 제출방법

○ 우편 : (우)597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수산경영과

○ 팩스 : 061)659-5828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여수시 수산경영과(☎ 061-659-5597)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의견제출(우편, 팩스 등) 후 수신여부 확인 전화 필수(미확인으로 인한 의견 누락 시 우리시 책임소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 붙임 1 】 낚시통제구역 지정 위치도

여수수협 위판장 일원

□ 위치 : 여수수협 위판장 일원(청정위판장 일원 ~ 유류사업과 일원)

※ 빨간색 선으로 위치 표시

□ 면적 : 8,588㎡(길이 826m)

□ 위치도



【 붙임 2 】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제목 :	
	의견	
	기타	

「여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등록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상호 및 대표자 : (주)정희 김정환
-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121-13
- 3. 법인(개인) 등록번호 : 206211-0065538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여수-26-라-04	습식.방수공사	2026. 8. 7.

2026 년 8 월 7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위·해촉 명단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29조, 「여수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및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7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위·해촉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여 수 시 장

- 1. 공고기간 : 2026. 8. 10. ~ 2026. 8. 24.(15일간)
- 2. 위·해촉 인원 : 2명 (위촉 1명, 해촉 1명)
- 3. 위·해촉 현황

위 촉			해 촉		위·해촉 사유
소 속	성 명	임 기	소 속	성 명	
여수시의회	문상엽	2026. 8. 10.~ 2028. 1. 31.	여수시의회	홍현숙	여수시의회 의원 임기 만료

※ 위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공개함

- 4. 위원역할
 -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심의
 - 직권으로 부여·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심의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 5. 문의사항 :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061-659-3356)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결정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정정)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결정 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7.

여 수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850	8	국지 도로	106	소2-832 (신기동 112-1대)	소2-849 (신기동 112-14대)	일반 도로	-	전고-9호 92.01.25	
변경	소로	2	850	8	국지 도로	96	소2-833 (신기동 152도)	소2-832 (신기동 151-1도)	일반 도로	-	전고-9호 92.01.25	주차장54 공중 공간 중복결정 (공중 302㎡)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850	소로 2-850	○ 선형변경(종점변경) - 폭원 : 8m (변경없음) - 연장 : 106m → 96m 감)10m	○ 신기동 흥국상가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지역 주민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54 공중 공간 중복결정

3)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4	노외주차장	신기동 112-1번지 일원	2,289.9	증)517.8	2,807.7	여고-85호 06.06.13	소로2-850호선 공중 공간 중복결정 (공중 302㎡)

4)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4	노외 주차장	- 주차장 면적 변경 - 2,289.9㎡ → 2,807.7㎡ (증 517.8㎡)	신기동 흥국상가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지역 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소로2-850호선 공중 공간 중복결정

2. 열람기간: 2026. 8. 7. ~ 2026. 8. 21.(14일간)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여수시청 도시계획과(본청 1층)

4.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기타사항: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세부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의(2차) 공시송달 재공고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자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상 협의하고자 문서를 송달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재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자산공원 조성사업
- 나.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 다. 사업위치 : 여수시 수정동 75번지 일원
- 라. 사업기간 : 2020. 6. 25. ~ 2027. 6. 30.

2. 공고내용

- 가. 공고기간 : 2026년 8월 11일 ~ 2026년 8월 25일(15일간)
-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보상계획

-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 나. 협의장소 : 여수시 공원과
(전남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 망마경기장 1층 공원과)(☎061-659-4646)

- 다. 보상방법 : 현금보상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 · 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절차 진행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마. 협의조건

- 소유권 외의 권리(압류, 가처분, 근저당 등)가 있는 경우 해지 또는 말소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완납 후 협의 가능

바.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일반용 인감증명서 1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매수자: 여수시장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법인등록번호:3612】

- 주민등록초본 1부(전체 주소포함), 통장사본 1부,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 기타 지장물(물건) 보상청구 시 구비서류 등

4. 공시송달 대상

□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재	지번				성명	주소	권리내용	성명	주소
1	종화동	7	도로	46	46	김*언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 코아루수 ****-**** (등)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상속대상자	김*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동 ****호(죽림휴먼시아 2차)
								상속대상자	김*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 ****동 ****호(이천현대3차아파트)
2	종화동	8	전	360	360	김*언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 코아루수 ****-**** (등)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상속대상자	김*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동 ****호(죽림휴먼시아 2차)
								상속대상자	김*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 ****동 ****호(이천현대3차아파트)
3	종화동	10	도로	13	13	김*근	전라남도 여수시 동정 ****			
4	종화동	11	전	218	218	정*우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	상속대상자	서*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 **가든맨션 *_****
								상속대상자	정*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 **가든맨션 *_****
								상속대상자	최*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리원길 **-* **, *층 **호(노학동)
5	종화동	23	전	136	136	김*언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 코아루수 ****-**** (등)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상속대상자	김*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동 ****호(죽림휴먼시아 2차)
								상속대상자	김*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 ****동 ****호(이천현대3차아파트)
6	종화동	51-1	전	314	314* 36/273	김*운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	상속대상자	김*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역곡동)
								상속대상자	한*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용비로 **, ****동 ****호(한화포레나 평택화양)
								상속대상자	김*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 *동 ***호(연등동, 성학아파트)
7	종화동	51-3	전	387	387* 36/273	김*운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	상속대상자	김*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역곡동)
								상속대상자	한*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용비로 **, ****동 ****호(한화포레나 평택화양)

								상속대상자	김*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 *동 ***호(연등동, 성학아파트)
8	종화동	75-1	전	86	86* 12/29	김*기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	상속대상자	김*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자산공원길 **(종화동)
								상속대상자	김*명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 ***동 ***호(대성동, 은어송마을2단지)
9	종화동	75-2	도로	10	10* 12/29	김*기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	상속대상자	김*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자산공원길 **(종화동)
								상속대상자	김*명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 ***동 ***호(대성동, 은어송마을2단지)
12	종화동	189	전	76	76	박*숙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동 ***	상속대상자	곽*란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
13	종화동	231	임	324	324	김*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14길 * **동 ***호(화곡동, 오케이파크빌)			
14	종화동	250	전	301	301	정*암*	전라남도 여수시 동정 **			
16	종화동	265	전	167	167	정*우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	상속대상자	서*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 ***맨션 *_***
								상속대상자	정*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 **가든맨션 *_***
								상속대상자	최*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리원길 ***, *층 **호(노학동)
18	종화동	628	임	413	413	박*언	전라남도 여수시 동정 **	상속대상자	박*승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중앙로 *** ***동 ***호(화성 뉴타운 LH9단지)
								상속대상자	박*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 ***동 ***호(간석동, **맨션)
								상속대상자	박*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수문로101번길 *(죽교동)
19	종화동	687	전	142	142	임*자	광주시 양림동 ***-**			
20	종화동	701-7	임	14	14	종*동 *영 *원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			
21	수정동	35	전	87	87* 2/13	김*운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	상속대상자	최*운	여수시 수정동 ***
								상속대상자	김*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97번길 **(준의동)
								상속대상자	정*근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 ***, ***동 ***호(야동동, 대방아파트)
								상속대상자	정*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 ***호(수진동, 우리빌아파트)
22	수정동	50	전	175	175* 2/13	김*운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	상속대상자	최*운	여수시 수정동 ***
								상속대상자	김*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97번길 **(준의동)
								상속대상자	정*근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 ***, ***동 ***호(야동동, 대방아파트)
								상속대상자	정*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 ***호(수진동, 우리빌아파트)
24	수정동	83-3	전	561	561* 60/1008	신*희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	상속대상자	신*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쌍봉로 ***, *동 ***호(둔덕동, 중앙미평하이츠아파트)
								상속대상자	신*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국동15길 *_*(국동)
								상속대상자	박*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둔덕7길 **-*

								상속대상자	신*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둔덕7길 ***
								상속대상자	장*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박람회길 ** ***동 ***호(덕충동, 엑스포힐스테이트1단지)
31	수정동	116	전	83	83	장*동	전라남도 여수시 동정 ***	상속대상자	강*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호5길 **, *동 ***호(소호동, 금호아파트)
								상속대상자	강*유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남북로 ** ***동 ***호(포레나양평)
								상속대상자	장*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서로 **, ***동 ****호(여서동, 경남아파트)
								상속대상자	장*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관문6길 **, ***동 ****호(관문동, 여수 엑스포 골드클래스 아파트)

□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단위	소유자	
							성명	주소
1	종화동	8	전	분묘	유연단장	2 기	김*언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 코아루수 ****-***** (등)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
				분묘	유연합장	1 기		
				망주석	H1.5	2 식		
				상석	1*0.75*0.25 w/ 혼유석 향로석	2 식		
				반월석	W0.5	2 식		
				둘레석	견치석 원형	3 식		
				석축(어란)	견치석 H0.2	20 m		
				석축(하단)	견치석 H0.85	30 m		
2	종화동	23	전	울타리	그물망+목재 +파이프	40 m	김*언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코아루수 ****-***** (등)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
4	종화동	75-1	전	주택	조적조 강판 및 슬라브지붕 10*8+2*3.5	87 m ²	김*광	전라남도 여수시 자산공원길 **
				창고	조적조 스테 4*6	24 m ²		
				물탱크	PP 1Ton	1 식		
				계단 5단+7단	콘크리트	1 식		
				변소	2*1.5	3 m ²		
				담장	조적조 H1 L10	10 m ²		
				울타리	조적 철재 및 광나무	10 m		
				철대문	W1 철재(기둥포함)	1 식		
				빨래건조대	철재	1 식		
				동백나무	H1.5 W1.5	1 주		
				감나무	H4 R20	1 주		
				느티나무	H4 R15	1 주		
				석류나무	H2 R5	1 주		
				사철나무	H2	1 주		
				앵두나무	H2.5 R20	1 주		
				살구나무	H6 R30	1 주		
				동백나무2	H1.2(외부화단)	1 주		
				화단	2.5*0.6(주택외부)	1.5 m ²		

6	종화동	136-2	전	분묘	유연단장	1 기	미상	
7	종화동	232	전	울타리	철망및그물망	100 m	서*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 ***호(종화동, **맨션)
10	종화동	628	임	울타리	그물망+목재	45 m	박*언	여수시 동정 **
13	수정동	33	임	분묘	유연단장	1 기	미상	
14	수정동	113-1	전	매실나무	R5 H2	3 주	미상	
15	수정동	113-1	전	울타리	그물망+철제 (수풀에덮임)	10 m	미상	

5. 기 타

가.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지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공원과(☎061-659-46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과태료 본부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어선안전조업법」 제58조제5항제4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본부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8. 11. ~ 2026. 8. 25.(15일간)

2.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송달내용

성명	주소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액	납부기한
고*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14번길 ***	구명조끼 미착용	450,000원	2026. 8. 31.

3. 고지서 발급 및 문의처 :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061-659-3921)

4. 기 타

-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제1항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불임과 같이 과태료 처분 통지하오니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12/1,000의 증가산금이 5년까지(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하천 구역 내 위반사항 원상회복 명령(2차) 및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여수시 공고 제2026-2493호

우리 시 하천 구역에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점·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72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제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주소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여 수 시 장

- 공 고 명 : 하천 구역 내 위반사항 원상회복 명령(2차)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8. 11. ~ 8. 25.(14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제69조, 제72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 공시송달 대상 : 불임 참고
- 고지사항

가. 상기 불법 점용물에 대해 2026년 8월 25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불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및 의견제출처 : 여수시 건설과 하천팀 (☎061-659-4038)

가.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나.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웅천11길 7(임시청사 건설과)

다. 팩스번호 : 061-659-5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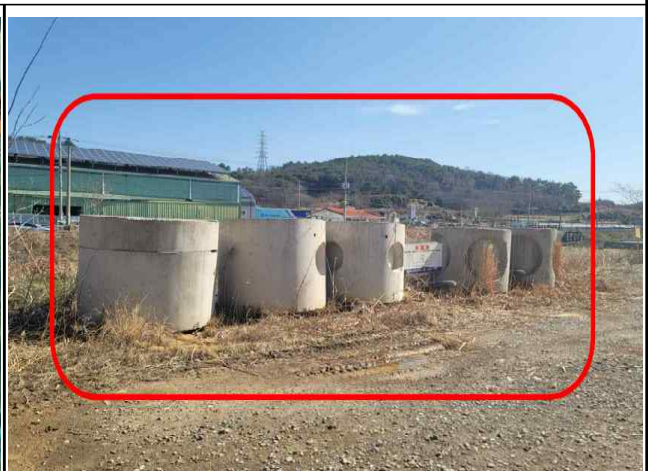
라. 제출기한 : 2026. 8. 24.(월)까지

※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예정

□ 공시송달 대상

연 번	행위자 (성명 및 주소)	위 반 내 용	위 치	하 천 명	하 천 구 분	비 고
1	미상	물건적치 (폐자재) 4개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1360-9번지 (서촌리 1431-2번지 일원)	화양천 (009)	지방 하천	
2	미상	가설건축물 2개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산동 589-5번지	쌍봉천 (008)	지방 하천	
3	미상	물건적치 (폐자재) 1개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산동 253번지	쌍봉천 (010)	지방 하천	
4	미상	물건적치 (폐자재) 1개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산동 642-2번지	쌍봉천 (011)	지방 하천	
5	미상	불법경작 1개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413-24번지	쌍봉천 (017)	지방 하천	
6	미상	가설건축물 1개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암동 2187-42번지	상암천 (012)	지방 하천	

위 치 도 및 현 장 사 진

	
화양천(0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1360-9번지(1431-2번지 일원)
	물건적치(폐자재) 4개소
	
쌍봉천(0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산동 589-5번지
	가설건축물 2개소
	
쌍봉천(0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산동 253번지
	물건 적치 1개소

위 치 도 및 현 장 사 진



쌍봉천(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산동 642-2번지
물건 적치 1개소



쌍봉천(0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413-24번지
불법경작 1개소



쌍봉천(0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암동 2187-42번지
가설건축물 1개소

제2026-2493호

행정대집행 고 고 서

성 명 : 미 상

주 소 : 미 상

2026년 4월 20일 여수시 공고 제2026-1317호와 관련하여 귀하의 불법 점·사용행위에 대해 2026년 5월 3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8월 25일까지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예정임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고고합니다.

※ 위 고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수량	대집행 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1360-9번지(서촌리 1431-2번지 일원)	물건적치	1개소	원상복구 및 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산동 589-5번지	가설건축물	2개소	원상복구 및 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산동 253번지	물건적치	2개소	원상복구 및 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산동 642-2번지	물건적치	1개소	원상복구 및 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413-24번지	불법경작	2개소	원상복구 및 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암동 2187-42번지	물건적치	1개소	원상복구 및 철거

2026년 8월 11일

여 수 시 장

소하천 구역 내 위반사항 원상회복 명령(2차) 및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여수시 공고 제2026-2494호

우리 시 소하천 구역에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점·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제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주소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여 수 시 장

- 공 고 명 : 소하천 구역 내 위반사항 원상회복 명령(2차)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8. 11. ~ 8. 25.(14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17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 공시송달 대상 : 불임 참고

6. 고지사항

가. 상기 불법 점용물에 대해 2026년 8월 25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불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및 의견제출처 : 여수시 건설과 하천팀 (☎061-659-4038)

가.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나.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웅천11길 7(임시청사 건설과)

다. 팩스번호 : 061-659-5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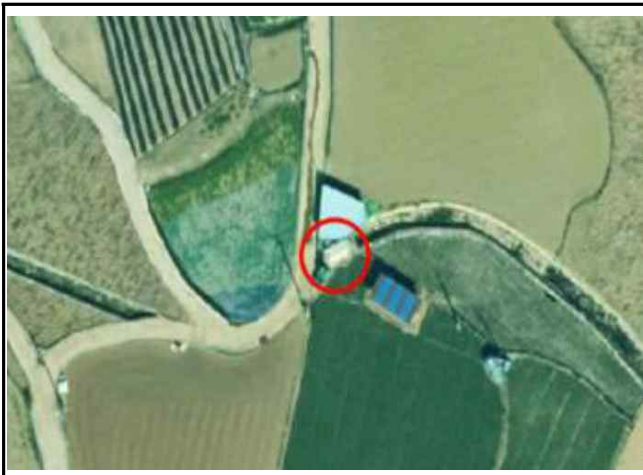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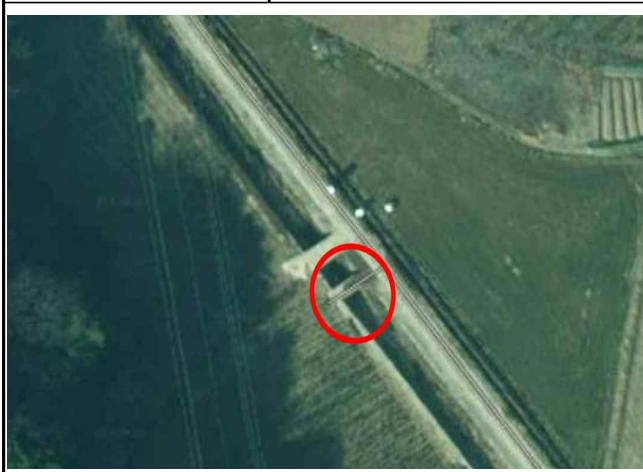
라. 제출기한 : 2026. 8. 18.(화)까지

※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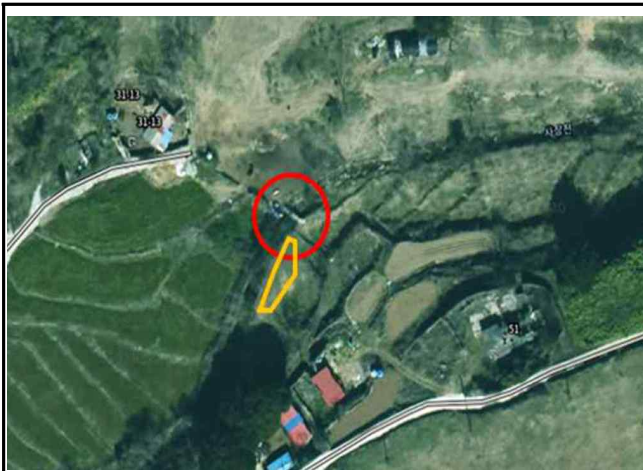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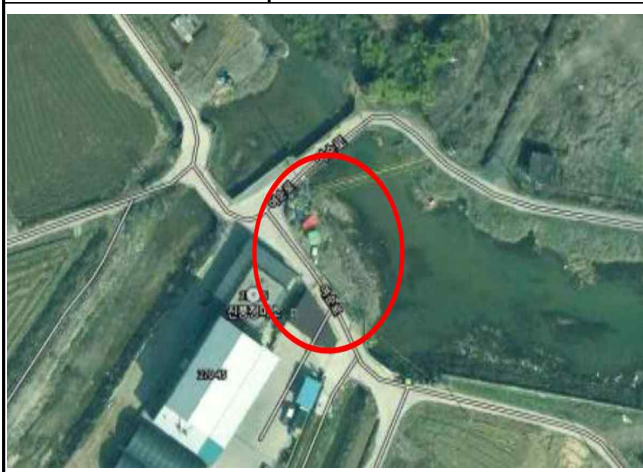
□ 공시송달 대상

연 번	행위자 (성명 및 주소)	위 반 내 용	위 치	하 천 명	하 천 구 분	비 고
1	미상	복개구조물 1개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911번지(711번지 일원)	작금3천 (002)	소하천	
2	미상	가설교량 2개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만흥동 1473번지(341번지 일원)	절골천 (001)	소하천	
3	미상	가설교량 2개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1871-1번지(1870-1번지 일원)	연화지천 (002)	소하천	
4	미상	가설교량 1개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남면 두모리 1631번지(150-5번지 일원)	사장천 (001)	소하천	
5	미상	물건적치 2개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1488-9번지(1629-18번지 일원)	우산천 (001)	소하천	
6	미상	가설교량 1개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산32-2번지	하사천 (005)	소하천	

위 치 도 및 현 장 사 진

	
작금3천(002)	전남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911번지(711번지 일원) 물건 적치 1개소, 구조물 설치 1개소
	
절골천(001)	전남 여수시 만흥동 1473번지(341번지 일원) 가설 교량 2개소
	
연화지천(002)	전남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1871-1번지(1870-1번지) 가설 교량 1개소

위 치 도 및 현 장 사 진

	
사장천(001)	전남 여수시 남면 두모리 1631번지(150-5번지 일원) 가설 교량 1개소
	
우산천(001)	전남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1488-9번지(1629-18) 물건 적치 2개소
	
하사천(005)	전남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산32-2번지 가설 교량 1개소

제2026-2494호

행정대집행 고 고 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4월 20일 여수시 공고 제2026-1316호와 관련하여 귀하의 불법 점·사용행위에 대해 2026년 5월 3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8월 25일까지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예정임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고고합니다.

※ 위 고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대집행 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911번지 (711번지 일원)	복개구조물 1개소	원상복구 및 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만흥동 1473번지 (341번지 일원)	가설교량 2개소	원상복구 및 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읍촌면 가장리 1871-1번지 (1870-1번지 일원)	가설교량 2개소	원상복구 및 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남면 두모리 1631번지 (150-5번지 일원)	가설교량 1개소	원상복구 및 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1488-9번지 (1629-18번지 일원)	물건적치 2개소	원상복구 및 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산32-2번지	가설교량 1개소	원상복구 및 철거

2026년 8월 6일

여 수 시 장

2026년 농지 전수조사(현장조사) 실시 공고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관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농지 이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2026년 농지 전수조사(현장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26. 8. 11.

여 수 시 장

1. 조사 개요

- 조사목적: 관내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파악 (농지 전수조사 관련 현장조사)
- 조사기간: 2026. 8. 11. ~ 2026. 12. 31.
- 조사장소: 여수시 일원
- 조사대상: 여수시 관내 농지 소유자, 실경작자 및 농지 이용현황 등
- 조 사 원: 여수시 소속 담당공무원 및 농지조사원

2. 시민 협조 사항

- 조사대상 농지 출입 시 협조
- (소명 요구 시) 자경 내역 또는 합법적 임대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내역서 등) 제출 협조

3. 법적 근거 및 제재 사항

- 법적근거: 「농지법」 제54조, 제54조의4 및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등
- 거부시제재: 「농지법」 제54조의4 제4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의

- 본 조사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조사이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여수시청 농업정책과(☎ 061-659-4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7.

여 수 시 장 (인)

1. 도로명주소(부여)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부여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061-659-3355 ~ 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3.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폐지)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정동 7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오동도로 127	20260807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산146-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서우개길 52	20260807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산4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굴개길 106-48	20260807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장수로 47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장수로 338	20260807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덕충동 21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엑스포대로 320-76	20260807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1235-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원죽길 2-16	20260807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서덕리 산23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1851-42	20260807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남면 안도리 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남면 동고지길 160-3	20260807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64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인금이길 11	20260807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정면 백아리 2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정면 백아해안길 43-13	20260807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을 고려	

공 고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8.

여 수 시 장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촉위원의 “한 차례 연임” 제한으로 장기 연임에 따른 부패 방지(안 제26조)
 - 기존의 위촉위원 ‘연임 가능’ 규정을 ‘한 차례 연임 가능’으로 제한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부패 발생 가능성 차단
- “위원의 기피” 규정 신설(안 제27조)
 -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제척·기피·회피’으로 추가·개정하여 기피 대상 위원은 의결 배제되도록 규정 개선

3. 입법예고기간 : 2026. 8. 8. ~ 2026. 8. 10.(2일간)

4. 개정조례안 : 붙임 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6. 의견제출

이 시행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10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거나 메일(ekdbs702@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68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2층 산업지원과
- 받는 사람 : 여수시장(산업지원과)
- 전 화 : 061-659-3383, 팩스(FAX) : 061-659-5817
- 이 메 일 : ekdbs702@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입 법 예 고 에 대 한 의 견 서

☐ 조 례 명 :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 중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회피**)”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

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전에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8조제4호 중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2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을 “사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재직 중인 위원에 대하여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현행	개정안
제2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생략) <u><신설></u> ② <u>위원</u> 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③ <u>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u> <u><신설></u>	제2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u>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한다.</u> ③ <u>위촉직 위원</u> ----- ----- --. 1. ~ 5. (현행과 같음) ④ <u>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 <u><삭제></u> ⑤ <u>위촉직 위원 중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

현행	개정안
제2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생략) ② <u>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 <신설> 제2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u>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u>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u>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u>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전에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 ③ <u>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 제28조(위원의 해촉)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2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u>----- ----- 5. ----- <u>사임</u> ----- -----